

## 강의평가규정

제정 2023.08.2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강의평가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평가시기)** 강의평가는 매 학기 2회(중간, 기말) 실시하며, 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응답률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1. 중간 강의평가는 학기 중 7주차와 9주차 사이에 시행한다. 단 집중수업 등의 사유로 과목별 실시 시기가 상이할 수 있다.
2. 기말 강의평가는 매 학기 학기말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시행한다.

**제3조(평가대상)** 강의평가는 당해 학기 개설된 전체 강좌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블록식 수업의 경우 기말 강의평가만 진행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현장실습 과목
2. 봉사활동 과목
3. 기타 제외 요청에 대해 교수학습지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교과목

**제4조(평가방법)** ① 강의평가는 수강 신청한 교과목에 대해 학기 중 별도 공지된 기간에 학생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다.

② 5점 척도 별점제 평가로 실시하며, 별도로 서술형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.

③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온라인 성적 열람기간에 해당학기 해당과목에 대한 성적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.

**제5조(평가문항)** ① 강의평가 문항은 <별표 1>과 같다.

② 강의평가 문항에서 서술형 등 평가제외 문항은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.

③ 강의평가 문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평가점수 산정)** ① 평균점수 산출은 5점 척도 점수를 일괄 합산 평균하여 소수점 넷째자리로 표기한다.

② 원점수 그대로 사용하고 수강인원에 따른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.

**제7조(평가결과 활용)** ① 평가결과는 교원의 강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되,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활용할 수 있다.

1. 전임교원의 업적평가·승진·재임용
2. 비전임교원의 재임용
3. 우수 교원 선정 및 포상
4. 교수법 교육 및 컨설팅

5.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

6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수강인원 15인 미만 강좌의 경우, 평가결과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③ 원격수업은 원격수업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 및 활용한다.

④ 점임 및 강사의 경우 수업평가 결과 4.0미만자는 다음 학기 출강을 제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 &lt;별표 1&gt; 강의평가 문항

문항번호	문항내용	문항유형
001	이 수업의 학습목표를 통해 내가 이 수업을 왜 수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였다.	5점척도
002	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경험을 하였다.	5점척도
003	이 수업을 통해 나의 생각이나 역량을 표현하고, 그에 대한 의미있는 피드백을 받는 경험을 가졌다.	5점척도
004	이 수업을 통해 내가 학습의 과정(과제, 토론, 발표, 창작 등)을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는 경험을 하였다.	5점척도
005	이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하는 경험을 하였다.	5점척도
006	이 수업에서 교수는 학습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였다.	5점척도
007	이 수업에서 교수는 학생들의 출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확인을 하였다. (교수가 매시간 출석을 확인한 경우 "매우 그렇다")	5점척도
008	교수님은 수업시간을 잘 지키셨으며 결강하신 후 보강을 하셨다. (결강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및 결강을 했으나 보강을 한 경우에는 "매우 그렇다")	5점척도
009	이 교과목을 수강한 종합적인 소감은?(수업의 내용 중 인상적인 부분 및 이유, 수업의 과제, 시험, 수업방식, 기타 등에 대한 의견 및 건의 사항 등을 기록)	서술형